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1. 11. 15 규칙 제 650호 일부개정 2019. 5. 9 규칙 제 963호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22. 7. 18 규칙 제1080호(회계관리에 관한 규칙)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[전문개정 2019, 5, 9]
- 제2조(융자신청 시기)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신청 시기는 1학기 학자금의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, 2학기 학자금의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. 〈개정 2019. 5. 9〉
- 제3조(구비서류)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5. 9〉
 - 1.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
 - 2. 등록금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
 - 3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증인의 재직증명서(학자금 융자신청액이 해 당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의 사람으로 한정 한다)
- 제4조(대상자 결정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신청 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융자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융자대상자와 「용인시 공무직 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5. 9〉
- 제5조(학자금 융자 기록관리)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융자기관에서 통 보된 학자금 융자대상자의 융자금상환현황 및 이자보전내역을 기록 관리

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신상변동신고) ① 학자금을 융자받은 공무직근로자는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융자 공무직근로자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5. 9〉
 - ② 시장은 신상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5. 9〉
- 제7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 〈개정 2022. 7. 18〉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폐지규칙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 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- 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 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융자된 학자금 및 이 자 보전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〈2019. 5. 9 규칙 제963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2. 7. 18 규칙 제1080호,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"「용인시 재무회계 규칙」"을 "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
④ 부터 ⑨ 까지 생략

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19. 5. 9〉

학자금융자신청서(제3조 관련)

신	소		속			성	명				민 등			전		화		
청										번		호		번		호		
인	임		용	1-3	월	일	재	직	년	현		재	ടി റി	각		종	÷1 61	
긴	연	월	일	년	펄	일	7)2	7}	월	퇴	직	금	천원	대	부	금	천원	
	_									Ė				7]	대	부		
학	성		명							입	학	금	원		41		원	
								1						금		액		
٦	주기	긘등	·록					E:	록금	71	성호	l Hl	원	금		회	원	
	번		호							//	, 9, 3	1 11	펀	대	부금	· 액	전	
	관							고	지					대		부		
			계					내	역	수	업	료	원	총		' 액	원	
생				-1.			-> >	-						_				
	학	亚	며	학교		¦과	. –				계		원	대		부	회	
	٦	خلك	0	(년	재 국,	, 공,	사립)				/1		il.	횟		수		
소	속	읶 -	용냥	1월일							7	재 즈	기 간					
フ]		_		- <u></u> 직금							-		부금액					
^기 확		확	اا -			 소속 :					직 :		<u> </u>	, 년 :		(인)		
의)]		<u> </u>					(ب	<u> </u>			~ ·			<u>o</u> .				
사	앙	713	반성) 확인													(직인)	
	Γ.	용이	시	공무?	직근회	로자	자녀	학	자금	융	자지	워에	관한 2	_ट 례	Ĺ	見る	는은 조례	
٦															_		- 받고자	
		'' - 합니				0 근	Ο τ	1 01	10	근	7 2		이프 ㅋ	~ 1 L	1 5	-11	1 5-27	
í	7.3	땁니	14.							,	5 1	_						
								년		-	실	Ţ	일					
												신	청인 :				(인)	
	용	이	,	시 증	} 구	하												
			<u> </u>			· · ·	2	2 2		-2 -2			D 1 - 2		-22 . 2			
	_	_	-		무 선	신정	채무	자외	• 연대	∦하	여 된	르 채	무 이행	의 :	책임	을 2	지겠음을	
Ŀ	건증	합니	l다.															
								년		٩	실	Ç	일					
												1	보증인 :				(인)	
-5] 1																		
심-	첨부서류 : 1. 재학증명서(재학생) 또는 합격통지서(신입생)																	
	2. 등록금 납입고지서(사본) 또는 영수증(사본)																	
	3. 보증인의 재직증명서(퇴직금의 2분의 1 초과시 해당)																	

- ※ 보증인은 본인이 직접 자성 날인 후 주민등록증을 사본을 제출
- ※ 신청인은 굵은 선 부분만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

[별지 제2호서식]

재직증명서(제3조제3호 관련)

신 청	소	4	1			성	명			주 r 번	긘		록 호				전 번		화 호		
인 인	임 연	년 월 일		년	ġ.		일	재 직 기 간		년 월		직	재 금		천	원	각 대	부	종 금		천원
용	·			학자금			용.														
소	속 7] 관	1	임용년	월	일		년	월	(일	재	ス] 7	7]	간				년	월
확	인 /	}	}-	현재퇴	직	금				천.	원	기	대	부	금	액					천원
	상기]와	,	같이 재	직히	하고	고 있	(음을	증명하) 여	주	시 <i>フ</i>	ו (י	바립	납니	다.					
									년	월			Ą	j							
													신	청약	인 :						(인)
				귀하																	
	상기]와	,	같이 재	직혀	하고	고 있	음을	증명합	라니다	ŀ.										
									년	월			Ó	Ī							
										확역	인져	나 :	: :	소속	누기	관	장			(2	직인)

※ 신청인은 굵은 선 부분만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

[별지 제3호서식] 〈개정 2019. 5. 9〉

학자금융자 공무직근로자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

(제6조제1항 관련)

신고	L인	소	속		성	땅		주민등록 번 호	
학	생	정	명	학교명	학	년	변동내용	변동일자	사 유
9	ő								

위와 같이 학자금융자 공무직근로자 자녀의 신상 변동사항을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인)

용 인 시 장 귀하

※ 첨부서류

졸 업: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: 제적증명서 1부

휴 학: 휴학증명서 1부 (휴학자는 유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)

복학, 학교변동, 유급 등 : 재학증명서 1부